

# 전용실시계약서

XXXX(이하 "개발자"라 한다)과 XXXX(이하 "실시자"라 한다)는 "개발자"가 보유한 ----기술을 "실시자"가 실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상 사용되는 아래 용어는 다른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다음의 의미로 한정된다.

- ① "계약기술"이란 다음 각호의 특허(출원포함)를 말한다. 단, 출원중인 지식재산권이 등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본 계약은 계속 유효하며, "실시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별첨1 기재 특허
  2. 전호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출원된 국가 이외의 국가에 출원할 예정인 특허
  3. 제1호의 특허를 우선권 주장하여 출원할 예정인 특허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각 특허로부터 파생되는 분할출원, 계속출원, 일부계속출원
- ② "계약제품"이라 함은 "계약기술"을 사용하여 생산되는 제품 및 생산장치를 말하고, 중간체 또는 원료를 생산판매하는 경우 그 중간체나 원료를 말하며, "계약기술"이 공정(공정개선 또는 공정대체를 포함)을 최종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공정(개선된 공정, 대체된 공정 포함)을 말한다. Pilot Plant 등으로 생산된 시제품의 경우에도 이를 포함한다.
- ③ "실시"라 함은 "계약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계약제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또는 "계약기술"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④ "생산개시"라 함은 "실시자"가 "계약기술"을 이용하여 "계약제품"을 최초로 생산한 것을 말하며 그 해당일을 "생산개시일"이라 한다.
- ⑤ "매출액"이라 함은 "계약기술"과 관련된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용역 등의 총매출액을 말한다.
- ⑥ "개량기술"이라 함은 "계약기술"과 목적은 동일하지만 계약기술의 구성요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계약기술의 구성요소에 새로운 구성요소를 추가함으로써 계약기술의 효과를 개선시킨 기술을 말한다.

## 제2조(전용실시권의 내용)

- ① "개발자"는 "실시자"가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국내외에서 "계약기술"을 실시할 권리를

허여한다.

- ② "개발자"는 "실시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계약기술"을 실시할 권리를 허여할 수 없다.
- ③ "실시자"는 "개발자"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계약기술"을 실시할 권리를 허여하거나 본 계약으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 ④ "개발자"는 "실시자"가 "계약기술"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제3조(계약기간 등)

-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 ② "실시자"는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생산개시"를 하여야 하며, "생산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생산개시일"을 서면으로 "개발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개시"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에 "개발자"의 서면동의를 득한 후 이를 연기하되, "생산개시"의 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총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제4조(실시 대가)

"실시자"는 다음과 같이 실시료를 "개발자"에게 지급한다.

- ① (기술료) "실시자"는 기술료로 금--원정(W--))을 다음과 같이 "개발자"에게 지급한다. 단, 기술료를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도약속어음,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은행지급보증서, 전자어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보증 또는 담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지급일자	금액(원)	지급수단
1차	계약 체결 시	금--원정 (W--))	현금으로 지급
2차	20--. --. --.	금--원정 (W--))	(지급수단 기재)
3차	20--. --. --.	금--원정 (W--))	(지급수단 기재)
합계		금--원정 (W--))	

- ② (경상기술료) "실시자"는 경상기술료로 "생산개시일"로부터 본 계약 만료일까지 매년 본 "계약제품" "매출액"의 %를 제5조에 의거 "개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 ③ 본 계약에 따라 행해진 모든 지불은 여하한 이유라도 "실시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제5조(경상기술료 계산) "실시자"는 본 계약서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의 기술료를 다음과

같이 "개발자"에게 지급한다.

- ① 경상기술료의 계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연도로 산정하여 당해연도 경상기술료를 익년도 3월말까지 "개발자"에게 지급한다.
- ② "실시자"는 전항에 의한 경상기술료 지급 시 관련 세무자료 등 공인된 기술료 산출근거를 "개발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실시자"가 제4조 각 항의 기술료 지불을 지연하는 경우 "실시자"는 해당연도 ■은행 당좌대월금리 이자를 일수별로 계산하여 더한 금액을 "개발자"에 지불하여야 한다.
- ④ "실시자"는 대한민국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원칙에 따라 회계장부를 작성, 보관하고 "개발자"가 제2항에 의한 기술료의 산출근거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실시자"의 회계장부를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의한 회계장부의 검사 결과 정당한 금액과 이미 지급한 금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실시자"는 이를 즉시 "개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그 차액이 이미 지급한 금액의 ■%를 초과하는 경우 "개발자"가 회계장부의 검사를 위하여 사용한 비용도 "실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6조(기술정보 제공)

- ① "개발자"는 "계약기술"의 실시를 지도하기 위하여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개월 간 ■시간의 범위 내에서 "실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술정보를 제공한다.
  1. (기술정보)
  2. (기술정보)
  3. (기술정보)
  4. (기술정보)
- ② 전항의 기술정보 외에 추가로 필요한 기술지원에 대해서는 "개발자"와 "실시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 ③ 전항의 "개발자"의 기술지원에 관하여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실시자"가 부담한다.

**제7조("계약기술"의 개량)** "실시자" 또는 "실시자"의 임원 및 피용자가 "계약기술"을 개량하고자 하거나 이를 근거로 새로운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실시자"는 사전에 "개발자"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하여야 하며 취득된 지식재산권은 쌍방의 공동소유로 한다. 단, "개량기술"의 실시 역시 본 계약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보고 본 계약의 적용을 받는다.

#### 제8조(지식재산권)

- ① "계약기술"의 출원, 보정, 등록, 유지, 실시권 설정 등 지식재산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실시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 ② "개발자"는 "계약기술"이 등록되면 "실시자"의 요청에 따라 특허등록원부에 실시권을 설정한다.

**제9조(신의성실의 의무)**

- ① 본 계약이 목적하는 바를 상호 충족시키기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개발자"는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 "실시자"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실시자" 또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실시자"는 "개발자"가 요청하는 경우 상업화 진전사항 및 기타사항을 서면으로 "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기술 보증면제)**

- ① "개발자"는 "계약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생산, 시장 적합성과 경제성 및 판로시장 개척 또는 영업 및 판매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 ② "개발자"는 "실시자"가 실시하는 "계약기술"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기술"의 실시에 의하여 "실시자"에게 발생한 제3자에 대한 기술료 지불을 포함하는 "실시자"의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개발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③ 제3자가 "계약기술"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려고 하는 사실이 있거나 또는 제3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개발자"와 "실시자"는 상호간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 ④ "개발자"가 침해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실시자"는 "개발자"의 요청에 의하여 "개발자"를 원조하기로 한다. 침해사건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시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⑤ 제3자의 침해로 인하여 배상받게 되는 손해배상금은 침해배제를 위하여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와 법률적 조치를 취한 당사자에게 --%씩 배분한다.
- ⑥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실시자"가 더 이상 "계약기술"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본 계약은 해지된다.
- ⑦ "실시자"가 "개발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계약기술"의 효력을 다툰 경우에는 "개발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비밀보장)** 본 계약의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인지하게 될 모든 노하우, 연구결과, 아이디어, 기술정보 및 제반 자료가 타에 제공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록 보안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 의무는 그 임원 및 피용자나 그 승계인을 통하여 사실상 위반됨이 없도록 하는 의무를 포함한다. 또한, 본 조항은 본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을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다. 단, 정부, 정부연구사업 관리기관, 법원 또는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등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개발자"와 "실시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유효하게 변경될 수 있다.

**제13조(불가항력)** 본 계약의 어느 일방도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여하한 성격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14조(계약의 해지)**

- ① "개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의 기한을 두고 "실시자"에게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라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개발자"는 기 지급받은 금액(은행도약속어음,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은행지급보증서, 전자어음 금액 포함)을 환불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실시자"는 계약해지일까지 납부하여야 할 실시료를 "개발자"에 지급하고, 기술자료를 "개발자"에게 반환하며, 본 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여야 한다.
1. 통보기한 내에 "생산개시일"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생산개시일" 전이라도 "실시자"가 생산을 포기한 경우
  2. "생산개시일" 이후 "실시자"가 조업중단 등으로 실시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실시자"가 제4조에 따른 기술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4. 압류, 가압류, 지급불능, 채무초과, 파산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 폐업, 휴업 등으로 인하여 "실시자"의 재산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5.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② 본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을 경우, "실시자"는 "계약기술"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계약제품"의 생산을 행하지 아니한다. 또한 "실시자"는 제3자에게 "계약기술"을 양도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계약기술"을 실시토록 하지 아니하고, "계약제품"을 생산케 하지 아니한다.
- ③ 본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 만료로 종료됨과 동시에 "실시자"는 "계약기술"에 설정된 실시권의 소멸등록을 수행한다.

④ 본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개발자"는 "계약기술"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으며, 이때 "실시자"로부터의 어떠한 항변에도 "개발자"는 면책된다.

**제15조(손해배상)** "실시자"는 본 계약을 위반하여 "개발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명칭사용)** "실시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 및 "개발자"가 "실시자"에게 제공한 보고서나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그 원본이나 복제, 복사물을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개발자"의 명칭을 암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중요사항의 변경)** "실시자"가 본 계약 체결 후 법인의 주소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개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개발자"의 착오는 "실시자"의 항변으로부터 면책된다.

**제18조(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혹은 쌍방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개발자"와 "실시자"는 이를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 **제19조(계약의 효력)**

- ① 본 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 ② 본 계약은 "개발자"와 "실시자"간 "계약기술"의 "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전의 "개발자"와 "실시자"간의 모든 문서에 우선한다. 또한 본 계약과 관련이 있는 다른 협의나 계약은 본 계약서에 언급되고 서면으로 작성되어 권한있는 당사자의 서명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없다.

**제20조(기술거래중개)** "개발자"와 "실시자"간의 "양도기술"과 관련된 본 계약의 기술거래에 관하여 중개기관 주식회사 비즈브릿지(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0, 1503호)가 중개를 담당하였음을 확인하며, "개발자"와 "실시자"는 중개기관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21조(해석)**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상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고, "개발자"와 "실시자", **중개기관**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개발자”**

주 소 :

업 체 명 :

대표이사 : (인)

**“실시자”**

주 소 :

업 체 명 :

대표이사 : (인)

**“중개기관”**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0, 1503호

업 체 명 : (주)비즈브릿지

대표이사 : 김 종 석 (인)

**※ 첨부(부록)**

1. ---

2. ---

(이하 여백)